

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

제정	2013. 12. 31	조례	제1981호
일부개정	2014. 8. 14	조례	제2005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6. 1. 1	조례	제2152호
일부개정	2016. 9. 26	조례	제2196호(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9. 3. 26	조례	제2459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	2022. 12. 26	조례	제292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 1. 1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9. 3. 26, 2022. 12. 26>

1. “학교 밖 청소년”이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2. “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”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3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제2호의 “대안교육”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6. 1. 1]

제3조(시장의 책무)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3. 26>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9. 3. 26, 2022. 12. 26>

1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
2. 지역 내 관계 기관들 간의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3.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4.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

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,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광명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3. 26, 2022. 12. 26>

1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
2.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지원 및 교육 지원 사업
3.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, 취업 지원, 자립 지원 사업, 학업 지원 사업
4. 학교 밖 청소년 여가·문화·체육 지원 사업
5. 학교 밖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
6.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
7.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
8.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의2(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)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소 및 위치

4. 개관연월일

5. 교육여건

가. 시설현황

나. 직원현황

다.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

6. 교육과정 운영계획서

[본조신설 2022. 12. 26]

제6조(지도·점검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지원금에 대하여는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16. 9. 26, 2019. 3. 26>

제7조(위원회의 설치)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8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2. 12. 26>

1. 지원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2.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3.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
4.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5.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9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. 1, 2019. 3. 26>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4. 8. 14, 2019. 3. 26, 2022. 12. 26>

1.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과장
2.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3.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
4. 청소년 분야 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
5. 관내 고용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업무 담당자
6.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
7. 학교 밖 청소년
8. 대안교육기관 보호자 대표 및 재학생
9. 대안교육기관장
10. 대안교육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
11.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 of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9. 3. 26>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9. 3. 26>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16. 1. 1>

제13조(수당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광명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)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

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·위탁 운영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3. 26>

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
2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
3.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
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 3. 26, 2022. 12. 26>

1.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·교육·자립·취업·학업지원
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·협력
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4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
5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6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7. 대안교육기관과 연계·협력
8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6. 1. 1]

제15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, 교육지원청,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12. 26>

[본조신설 2016. 1. 1]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중전 제14조에서 이동 <2016. 1. 1>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8. 14 조례 제2005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⑮ 까지 생략

⑯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 “안전자치행정국장”을 “평생교육사업소장”으로 한다.

⑰ 부터 ④③ 까지 생략

부칙 <2016. 1. 1 조례 제215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9. 26 조례 제2196호,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

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3. 26 조례 제245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12. 26 조례 제292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